

의안번호	2200224
의 퇴 인	이재정의원
회 답 일	2024.6.17.
추계번호	24B0568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 (이주대책의 수립 의무)	국가는 이주민의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1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2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	재량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31조(이주대책의 수립 의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, 상가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주거와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로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기구와 정비방침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사업¹⁾을 시행중에 있으며, 융자 사업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어, 향후 사업구역이 확정되어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입자와 상가세입자의 수가 결정되어야 융자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

1) [참고자료]에서 상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있음

상됨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노후계획도시 사업 진행현황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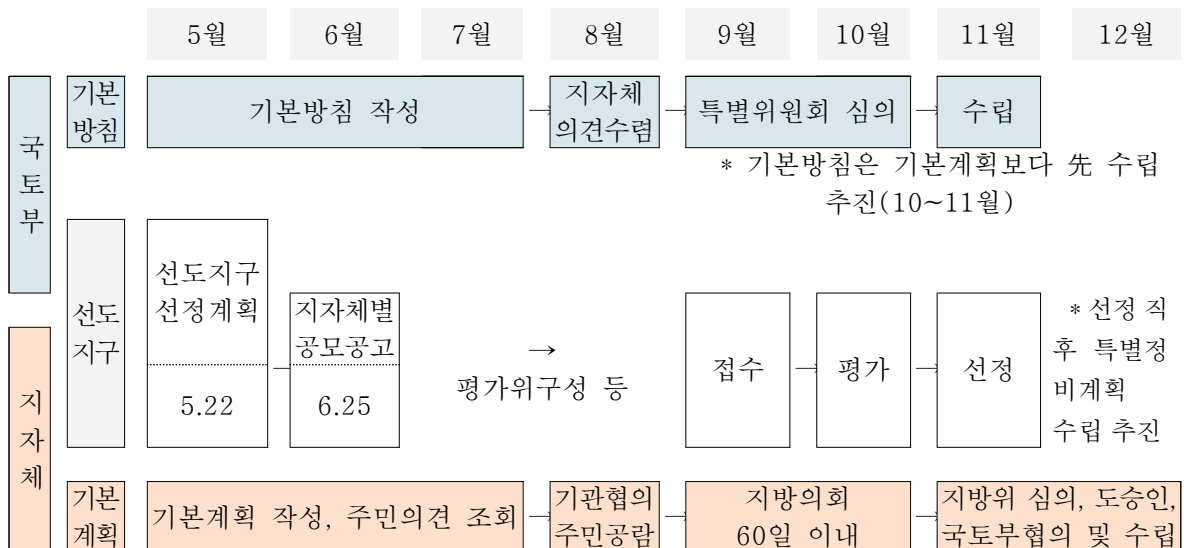
□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

-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(안) 발의(송언석 의원, '23.3.24)
-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('23.12.26 공포, '24.4.27 시행)

□ 노후계획도시 사업 추진 계획

< '24년 >

- (기본방침) 8월 중 기본방침(안)을 작성하여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~11월 수립 예정
- (기본계획) 1기 신도시 기본계획(안)을 8월에 마련하여 주민공람,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 예정
- (선도지구)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6월 25일에 공모·공고하여 9월 제안서를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 선정 예정



*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경우, 지방의회 일정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< '25년 이후 >

-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: '25년
- 1기 신도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: '26년

[참고자료 2] 노후계획도시 사업 관련 국비 지원현황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용역('22~'24년)

- 기본방침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2022년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, 해당 연구용역 비용 13.7억을 적용
 - * 연구용역비 분담비율: 국토부(6/15), LH(5/15), 한국부동산원(2/15), HUG(2/15)
 - 과업에 기본방침 수립 외 특별법 제정 등 제도화 방안 연구 포함

< 연구용역 개요 >

- 용역명 :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(1. 정비기본방침)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
- 용역기간 : '22.11.~'24.11.(24개월)
- 계약금액 : 13.7억원
- 용역기관 : 국토연구원, 한국법제연구원, 한아도시건축사사무소

□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위탁용역('24년)

- 정비지원기구로 지정*된 기관중 4개기관에 5개 위탁용역** 추진중
 - 정비지원기구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국토정보공사(LX), 국토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법제연구원
 - 위탁용역 기간 : '24.6월 ~ '24.12월
 - (LX)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화서비스 운영 : 12.5억원
 - (HUG)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구조화 지원 : 3억원
 - (LH) 1기신도시 이주대책 수립 및 지원 : 3억원
 - (LH)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위탁 : 2억원
 - (국토연구원)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 : 1억원